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062

발의연월일: 2022. 11. 3.

발 의 자:이인선·백종헌·김승수

윤두현 · 노용호 · 서일준

윤영석 · 최승재 · 김상훈

이종성 • 박성민 • 박대출

조은희 • 양금희 • 하영제

김성원 • 태영호 • 최영희

金炳旭・윤재옥・이채익

전주혜 · 정경희 · 조해진

정우택 • 박정하 • 전봉민

안병길 • 이철규 • 강기유

이양수 • 권명호 의원

(329]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 간의 납품대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상생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업 간의 수탁·위탁거래뿐만 아니라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중앙관서 및 「지방자치법」에따른 지방자치단체(이하 "공공부문"이라 한다)와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.

그런데 교육청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수탁·위탁거래 규모가 상당함에

도 불구하고, 현행법상 상생결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8호의3).

법률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의3 중 "지방자치단체"를 "지방자치단체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교육청의 상생결제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8호의3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수탁·위탁거래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8의2. (생 략)	1. ~ 8의2. (현행과 같음)
8의3. "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	8의3
체의 상생결제"란 「국가재	
정법」 제6조에 따른 중앙관	
서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	
에 따른 <u>지방자치단체</u> 가 공	지방자치단체(특별
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	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
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	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
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	<u>다. 이하 같다)</u>
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	
것을 말한다.	
9. ~ 11. (생 략)	9. ~ 11. (현행과 같음)